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11. 12.(금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	·과장 김광림, 사무관 이동훈, 주무관 이승현 ·☎ (044) 201-3542, 3543
보 도 일 시		2021년 11월 15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5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허위연식 타워크레인(188대) 적발... 등록말소 등 엄중조치 - 노후장비 연식을 고의로 속인 경우 등록말소·소유자 고발 조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11월 12일부터 15개 시·도(55개 시·군·구)와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,905대('21. 9월 기준) 중 허위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총 188대를 조사하여 연식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 시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검토를 받아야 하고,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.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하여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하여 사용 가능하다.
 - * (비파괴검사) 강재 또는 용접부의 피로, 부식으로 인한 균열 여부 등 검사(정밀진단) 장비해체상태에서 전체장비(볼트·핀, 마스트 등)에 대한 안전성 확인
- 하지만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되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,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.
-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(이하 안전관리원)에서 올해 초부터 검사기관 자료와 민원·제보 등을 분석하여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.

-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등록되었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총 317대를 허위 연식 의심 장비로 보고, 지난달까지 국내·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188대를 확정했다.
- 허위연식 의심 장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,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할 계획이다.
- 이에 따라 허위연식으로 판단될 경우 「건설기계관리법」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는 직권으로 해당 장비를 등록 말소하여야 한다.
- 다만, 과거에 수입일자가 제작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등록 당시 행정적 오류나 소유자 착오로 인해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후 허위연식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자의 귀책사유를 검토하여 고발조치*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.
- * 거짓으로 등록한 소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국토교통부 김광립 건설산업과장은 “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, 앞으로도 허위 연식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